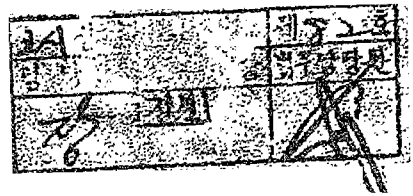




합계	
첨부	서울 특별시 고시 제 호 1부 1부
수신처	서과 79 (교통기, 교통안전기, 순찰대) 서경 1-27 (경무과 경백과)
제안	
일련번호	181 - 667f 79. 3. 14
수신	본국 공보 실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또한 교통법외 의안 통행 제한 고시를 송부 하오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 특별시 고시 제 호 1부 1부





도로교통법이 의하 통행 제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통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

1. (통행제한)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한 내용

차종	제한시간	통행제한지역	비고
1.5톤 이상 화물 자동차	4.1 - 10.31 07:00-22:00 11.1 - 3.31 08:00-23:00	도심권 및 부도심권의 통행을 제한한다.	
1.5톤 미만 화물 자동차	4.1 - 10.31 07:00-10:00 18:00-21:00 11.1-3.31 08:00-10:00 17:00-20:00	상 도	

나. 제한 지역의 도심권 및 부도심권은 다음과 같다.

(1) 도심권

(가) 시청 기점 반경 500미터의 교통압박이 집중되는 원형

(나) 위의 다음 도로와 그 연장선의 도로

제1한강교북단 - 강변4로 - 서울대교북단 - 강변4로 - 제2한강교북단 - 서교동 - 동교동 - 연희입체교차로 - 홍은동로타리 - 서원동3거리 - 북악로입구 - 정릉입구 3거리 - 길음교 - 미아3거리 - 월암교 - 용암동 - 용암입구 3거리 - 유학기술 연구소앞 - 위례동로타리 - 석촌사앞 3거리 - 산업대입구 - 정릉동로타리 - 신답로타리 - 사근동 - 경찰병원입구 4거리 - 성동사앞 - 환암대앞 - 성동교 - 성동로연결 강변2로 (승비교) - 제3한강교북단 - 잠수교북단 - 강변3로 - 제1한강교북단 연결지점까

(나) 제1한강교 통행제한

제1한강교는 전 폭물 차량이 대하여 24시간 통행 제한 구역으로 한다.

(다) 강변 2,3,4,로 및 제2한강교 - 서교동 - 동교동 - 연희입체교차로 - 홍은동 - 북악로입구 - 정릉 - 미아3거리간 도로는 07:00 - 10:00 (4.1 - 10.31) 08:00 - 10:00 (11.1 - 3.31)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한다.

(2) 부도심권 (도로)

영등포구중 도시기능의 집중 지역인 다음도로

(가) 제1한강교 남단 - 구 구청로타리 - 시장로타리 - 남도극장앞 (철길)간

(나) 문래동로타리 - 영등포역 - 구 구청앞 - 원호역간 도로

(다) 시장로타리 - 영등포역간 도로

(라) 구 구청앞 - 0.8 - 우선국교앞간 도로

2. (여의 규정)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다음과 같다

가. 긴급 자동차

나. 정한 구역내 통행 허가증을 소지한 차량

다. 장대차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폭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출 일몰

중립입이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전기노선 확충 계획) 전기노선 확충 계획은 조립공민 투도상정

진입을 전면 추진한다.

4. (택지 고시) 서울 특별시 고시 제 328호 (77. 9. 16)를 위함 택지

한다.

5. (시행일) 이 고시는 1979. 4. 1.부터 시행한다.

